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제 출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출연월일	2019년 7월 9일

#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9년 7월 9일

제출자 : 의회운영위원장

## 1. 주 문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「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,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가. 구성목적 : 의회에 제출되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

나. 활동기간 :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다. 위 원 수 : 13명 이내로 한다.

## 2. 제안이유

- 제11대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임기가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예산결산 업무에 대한 심사업무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

## 3. 관련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
- 「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 내지 제10조
-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 제68조 및 제72조

## 관계법령 발취

### 【지방자치법】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### 【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】

제8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 다만, 그 사안에 대한 심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.

제9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제10조(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선임과 교체선임) ①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. 다만,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

직권으로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을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.

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.

④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. 다만,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한다.

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### 【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】

제68조(예산안 심의)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도지사나 교육감으로부터 시정연설 또는 제안설명을 듣고,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

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(이하 "예결위원회"라 한다)에 회부하고,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.

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제72조(결산의 심사)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

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치도록 한다.

③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고 도지사나 교육감 및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8조제3항을 준용한다.